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61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김승원・민병덕・이정문
강준현・김종민・김원이
복기왕・이주희・권칠승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이행현황 공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채용비율에 미달하거나 업체등이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채용비율 또는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 이행현황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제40조의4(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0조의4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사람”을 각각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사람”을 각각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제1항 제2호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이행현황 공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채용비율에 미달하거나 업체등이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3(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채용비율 또는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 이행현황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신 설>	제40조의4(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을 초과한 업체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생 략)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0조의 4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	⑤ ----------제4항까지----------

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자를----------.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1. ----------자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2. ----------자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자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① ----------자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1. ----------자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자
<신 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4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제1항제2호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